

발행인 이권희
편집인 김용구
주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로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우)07255
Tel 02) 833-3097
Fax 02) 833-3039
홈페이지 www.ableinfo.co.kr
이메일 ablecenter@hanmail.net

51호

모니터링 리포트

CONTENTS

편집자 편지

김용구 소장

포커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체계 관련 법령 모니터링
손영수 선임연구원 ○ ○ ○ ○ ○ ○ ○ ○ ○ ○ ○ ○ ○ ○ ○ ○ ○ ○ ○ 6

국내 언론보도의 기준 및 장애 관련 보도 이행 현황
한지윤 주임연구원 ○ ○ ○ ○ ○ ○ ○ ○ ○ ○ ○ ○ ○ ○ ○ ○ ○ ○ ○ 12

2024년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예산 분석
고영란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20

이슈포착

발달장애인 학대 실태 분석 - MZ세대에 라떼를 외쳐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고재원 팀장 ○ ○ ○ ○ ○ ○ ○ ○ ○ ○ ○ ○ ○ ○ ○ ○ ○ ○ ○ 32

장애인 부모가 느끼는 발달장애인 돌봄 및 의료체계의 고충
전국장애인부모회 전경화 사원 ○ ○ ○ ○ ○ ○ ○ ○ ○ ○ ○ ○ ○ ○ ○ ○ ○ ○ ○ 36

영화평

멈출수 없는 행진 -유철 감독의 <비극을 찾아서>
푸른영상 류미례 감독 ○ ○ ○ ○ ○ ○ ○ ○ ○ ○ ○ ○ ○ ○ ○ ○ ○ ○ ○ 40

편집자 편지

- 사람의 얼굴

인공지능은 인간의 편견까지 학습하고 복제합니다. 약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고착화 하는 등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주류에 대한 혐오, 포용적이지 않은 주류사회 인식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우려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작동 매커니즘은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의식을 조정하고 지배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피하려면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권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가능하게 초기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소설 <AI 몸피로봇, 로댕>의 작가는 그에 대한 답으로 소설을 시작합니다. 람봇(사람과 로봇의 합성어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의미)은 얼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인류가 이 지구 생존의 과정에서 스스로 갖고 닦아온 종적인 특성이다. 기계 생명체인 로봇이 사람의 얼굴을 달게 된다면, 로봇은 감정입의 능력을 얻게 되어 사람의 마음에 감정과 정서의 자기장 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것으로 사람을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면서 다른 이와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고유성은 집단성이 아닌 개별성에 기초합니다. 로봇이 사람의 얼굴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작가의 말에서 고유성이 갖는 힘이 느껴집니다. 2024년도 첫 번째 모니터링리포트 <영화평>에는 고유성을 간과한 채 주류 문법으로 비주류 작품의 정체성이나 완성도를 접근하는 관행에 대한 류미례 감독님의 안타까움이 배어있습니다.

<포커스>에서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체계와 관련된 법률동향 및 올해 예산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 준칙>에 입각해 국내 장애관련 보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손영수 선임연구원님과 고영란 연구원님, 한지윤 주임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슈포착>에서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고재원 팀장님이 현장 경험을 살려 발달장애인 학대 실태를 분석해주셨습니다. 또한 전국장애인부모회 전경화님께서 직접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바를 바탕으로, 장애인 부모가 느끼는 발달장애인 돌봄 및 의료체계의 고충을 공유해주셨습니다.

모리터링리포트 제작에 참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사람의 얼굴을 가진 정치, 경제, 사회를 자주 접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모니터링센터소장 **김용구**

포커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체계 관련 법령 모니터링**
손영수 | 선임연구원
- **국내 언론보도의 기준 및 장애 관련 보도 이행 현황**
한지윤 | 주임연구원
- **2024년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예산 분석**
고영란 | 연구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체계관련 법령 모니터링

손영수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작년 3월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¹⁾을 발표하면서 9대 정책분야 · 30 대중점과제 · 74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교육, 고용, 사회참여,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향후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일 뿐만 아니라 센터의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올해 '장애관련 법령모니터링 사업'에서는 사업의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정부의 이행정도를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²⁾에서 나타난 분야의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며, 이번 회기의 주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일반 현황과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되었는지를 추적하고, 현 시점에서 해당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최중증'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달장애의 범주 내에서도 특히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의미한다. 하지만 발달장애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현장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거나 일부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정의한 것을 따르나 공통적으로 도전적 행동에 해당되는 장애나 타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 파괴적 행동, 과도한 외침이나 울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 등이 과잉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장애인을 최중증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각한 지적 장애, 중대한 운동 장애, 의사소통 능력의 심각한 제한, 자기 관리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독립적인 기능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종종 24시간 지속적인 감독과 도움이 필요하다.³⁾

다음으로 최중증을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의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면 주간활동 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이 있으며,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하여는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어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주간활동 서비스 | - 대상 :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2019년부터 시행되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별 바우처 급여 한도 내 최소 56시간, 최대 132간 이내 사용 | 전국 366개소의 제공기관 |
| 활동지원 서비스 | - 대상 :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 0시간, 최대0시간 이내 사용 | 전국 1,117개 제공기관 |
| 발달재활 서비스 | - 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바우처 카드 소지자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 전국 17개 제공기관 |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방과 후 활동서비스 | - 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바우처 카드 소지자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직접제공 또는 학교연계형 제공 |
| 행동발달 증진센터 | - 대상 : 발달장애 소아청소년과 보호자 - 치료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적응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 전국 10개소 지정 |

하지만 이러한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 생활 및 복지서비스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⁴⁾ 현행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3.09.
<https://www.korea.kr/news/estNewsView.do?newsId=156556653>
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p5, 36.

3)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제대로 돌보려면, 연세춘추, 2023.04.02.
<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9892>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3252629804>

4) "기관에서만 10번 거절당한 아들... '최중증'은 어디로 가나요", 한국일보, 2022.10.3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0261146000812>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종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기는 하나 서울시에 한정되어 16개의 수행기관이 운영 중이며 한 기관당 최대 4~5명의 이용자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문지원을 확대 및 그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별 최종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사업명 | 대상 | 내용 | 비고 |
|----------------------------------|--|--|---|
| 서울시 성인 최종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챌린지2)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타 기관 또는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이용경험이 없는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최종증발달장애인 | 자기주도적 선택활동, 실내 및 외부활동을 포함한 문화여가 활동 | 평일 주 4일 이용 2년간 이용 가능 -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 광주광역시 융합돌봄 지원센터 | 만 18세 이상 다중지원이 필요한 최종증발달장애인 |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낮활동 프로그램 지원주택 및 긴급돌봄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 | 2년간 이용 가능 -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지원주택 서비스의 경우 3년간 이용,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 대구 청암낮생활 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가 아닌 개인 이용료 부담 |

결론적으로 발달장애인과 최종증발달장애인 사이의 주요 차이는 필요한 지원의 정도와 장애의 심각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종증발달장애인에게 더 집중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관련 법률 검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의 장애유형 중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발달장애인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⁵⁾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의안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0건의 일부개정안이 있었으며, 이 중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의안은 1건만이 있었다.

5) <https://likms.assembly.go.kr>

<「발달장애인법」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관련 의안 >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의결일자 | 의결결과 |
|---|--------------|--------------|------|
| 2114701 | 2022. 02. 08 | 2022. 05. 29 | 수정가결 |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 | |
| <p>최종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하여 가정해체, 방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p> <p>이처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종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p> | | | |

해당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위해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종증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돌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최종증’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된 정의가 없고, 현장에서 다양한 사정을 통해 개별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어 ‘최종증 발달장애인’정의, 돌봄 지원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⁶⁾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제반 사항 마련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참고) 최종증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관련 회의록

○ 소위원장 강기운 (생략) 의사일정 제23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서영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입법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04.

다만 최종증의 정의, 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 예산 확보, 하위 법령 규정 등을 위해서는 경과규정이 현행보다 좀 늘려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경과규정을 제안드립니다. (중략)

○ 최혜영 위원
이제 지금 최종증 발달장애의 정의와 관련…… 6개월에서 2년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러니까 시행을 2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 최혜영 위원
너무 길지 않으세요?
○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런데 이게 사실 장애인 등급체계가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다시 한번 어쩌면 일종의 중증의 그 캡을, 최종증이라는 또 하나의 등급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15개 장애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종증의 범위를 어디로 정하느냐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 이렇게 최종증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장애인 자립지원과 같은, 지역사회의 자립지원같은 것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충실히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제도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략) 왜냐하면 이렇게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존에 지자체에서 겨우 일부 보완적으로 해 왔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국가서비스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그래도 정부가 의지를 보이면서 간다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이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지원의 나머지 체계를 국가 체계하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고 충분한 전달체계가 그런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395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中, 2022년4월26일

앞선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해당 수정안을 채택하였고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3」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조항 따라 정부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체계 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⁷⁾

제29조(거주시설·돌봄 지원)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종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2년 5월, 해당 개정법률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광주광역시의 최종증발달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24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17개 시도 전국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6월부터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됨을 알렸다.⁹⁾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며, 6월부터 최종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의 선정기준에 따라 3가지 서비스(24시간 개별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종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 구분 |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
| I. 핵심 구성요소 (70점) | 일상생활능력 | 일상생활능력점수 | 0~20점 |
| | |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 |
| | 의사소통능력 | 의사소통능력 | 0~10점 |
| | | 사회환경특성(7점) | 가정내 보호체계 |
| II. 지원 필요도 (10점) | 개인특성(3점) | 건강·장애특성 | 0~3점 |
| III. 지역발달센터 조사원 종합평가 (5점)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 | 0~5점 |
| | IV. 서비스조정위원회 종합평가 (15점) | | 3~15점 |
| 합계 | | | 100점 |

지금까지 ‘최종증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세부추진과제의 정책 이행을 위한 법 개정 및 2년간의 시범 사업을 통한 평가, 최근 서비스 시행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이행 정도를 확인하였다. 다만 돌봄 서비스 시행에 앞서 선정기준에 따른 3가지 서비스가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선정조사 항목에 따른 돌봄 대상자 선별에 논란이 우려되기도 한다.

8) 복지부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시행 예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1.31.

9)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433>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3.19.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746&pWise=sub&pWiseSub=C9>

국내 언론보도의 기준 및 장애 관련 보도 이행 현황

한지윤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주임연구원

헌법 제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 권리로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누구나 알고 있다. 이와 동시에 언론은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사회에서 언론의 보도 하나하나가 그대로 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회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견여보지 못한 일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 성향을 따라간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다.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환경, 인식 등이 변화한다. 언론이 부정적인 정보를 보도하면 사회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미디어 관련 법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2012
- ▶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1988
- ▶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87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0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2008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8
-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방송통신위원회, 2014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2000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05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1987
-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2004

그렇다면 언론은 보도할 때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헌법을 기준으로 미디어와 관련된 법이 재정되어 있고 언론 및 관련 기관의 설치, 기준, 운영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포괄적인 기준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대신 법적 효력은 없지만 각 분야별로 언론보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보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시민언론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그리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까지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권고했으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건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서 재정한 <언론보도 준칙>이다. <언론보도 준칙>에는 장애, 성, 인종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보도 준칙>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문에서는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인권문제를 발굴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선다고 명시하며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부준칙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3장에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보도 준칙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언론이 보도해서는 안 될 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관용구,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한 표현은 하지 않으며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언론보도 준칙> - 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

▶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위 내용이 법적 기준이나 효력을 가지진 않았지만 언론이 보도할 때 지켜야하는 부분이고 준수되어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언론보도 준칙>이 권고된 지 13년이 지났다. 언론은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언론보도 준칙>을 기준으로 알아보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21년과 2023년은 2월부터 11월까지, 2022년은 3~10월까지 10대 일간지의 지면 기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장애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하고 장애와 관련이 없는 기사도 포함하여 10대 일간지가 보도한 기사에서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는지 확인했다.

3년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언론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사가 많았다.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온 건 부적절한 단어 사용이다. <언론보도 준칙>에서 보면 1의 가와 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잘못된 명칭으로 장애인을 언급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눈먼 돈’, ‘얇은뱅이책상’과 같이 장애를 부정적인 비유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음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눈먼’은 3년간 184건이 보도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돌아오면 어김없이 ‘깜깜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병어리’, ‘절름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특히 인용문을 사용할 때 많다. 성경, 소설, 시 등에서 인용문을 사용할 때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장님’, ‘불구자’ 등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물론 인용이기 때문에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옛 문헌이나 성경도 시대에 맞게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을 ‘장애자’, ‘장애우’ 등으로 명칭하거나 장애 관련 기사에서 비장애인을 ‘일반인’, ‘정상인’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자’, ‘장애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장애 관련 기사에서 ‘정상인’, ‘일반인’은 장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보이게 한다.

| <2021~2023년 언론(신문)에서 보도된 부적절한 단어> | | | | | | | | | |
|-----------------------------------|-------|-------|--------|---------|---------|---------|--------|-----|--|
| ▶ 부정적 비유의 대상 | | | | | | | | | |
| 비유 | 눈먼 ** | 광란 ** | 깜깜이 ** | 얇은뱅이 ** | 꿀먹은 병어리 | 절름발이 ** | 병어리 ** | 총계 | |
| 보도수 | 182 | 123 | 104 | 25 | 16 | 8 | 8 | 466 | |
| ▶ 부적절한 표현 | | | | | | | | | |
| 비유 | 미숙아 | 기형아 | 장애자 | 일반인 | 교통마비 | 장애우 | 정상인 | 총계 | |
| 보도수 | 185 | 90 | 39 | 33 | 25 | 20 | 1 | 393 | |
| ▶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 | | | | | | | | | |
| 비유 | 눈먼자 | 얇은뱅이 | 절름발이 | 병어리 | 소경 | 곱추 | 그 외 | 총계 | |
| 보도수 | 30 | 14 | 12 | 9 | 8 | 6 | 21 | 100 | |

* 그 외: 언청이/맹인/귀머거리/장님 각 3건, 병신/문둥병자/곱사 각 2건, 불구자/정신박약아 각 1건

3장 1의 바에서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간혹 ‘장애 환자’ 또는 ‘장애가 발병하다’라는 표현도 눈에 띈다. 장애는 질병이 아니기에 ‘환자’, ‘앓다’와 같이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를 극복하다’, ‘장애를 이겨내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표현들은 장애는 극복할 수 있고 재활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질병과 장애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이를 언론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사회에 확산될 수밖에 없다.

또 언론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이 아닌 보장구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는 경우다. 장애인에 대해 보도를 할 때 가장 좋은 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해서만 보도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보장구를 언급해야 한다면 ‘보장구를 사용/이용하는 장애인’이 맞다. 기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의지하다’이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기대다’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이 마치 보장구에 의지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존재로 비춰지게 한다. 이런 표현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여지게 하기 때문에 <언론보도 준칙>에서도 이런 보도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 <2021~2023년 언론(신문)에서 보도된 부적절한 표현> | | |
|-----------------------------------|----|--|
| 1 | 표현 | 의학적 용어로 장애를 표현하는 보도 ……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 환자라면, …… <[김효원의 마음건강 클리닉] 자폐스펙트럼장애 가진 의사·변호사 자립 도움 수 있는 시스템 준비돼야, 경향신문, 2022.07.09> · 뮤지컬 ‘엘리스’는 루이스 캐럴의 고전 소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모티브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나영의 성장기를 그려냈다 <자폐 스펙트럼 가진 나영이… ‘이상한 나라’에서 홀로서기, 중앙일보, 2023.02.07> …… 이미 다른 장애를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시력 장애가 더 많이 발병하는 경향이 있다 <건강한는 당연한 것 아냐… 소중함 느끼는 ‘세계 눈의 날’ 되길, 동아일보, 2023.10.11> |
| | 사례 | |
| 2 | 표현 | 장애의 극복과 재활을 강조하는 보도 · 스웨덴 예테르보리시 다비드 레가 전부시장은 팔다리없이 태어나 장애를 이겨내고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를 지냈다. <[황철수설] ‘황연대 성취상’, 동아일보, 2021.08.16> · 장애 딛고… 美 여자축구대표팀 데뷔 <장애 딛고… 美 여자축구대표팀 데뷔, 문화일보, 2022.06.30> · 자폐성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KPGA 정회원에 합격, 투어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승민이다. <골프 우영우’ 두 번째 자력 출전 “컷 통과 목표라 최선다하겠다”, 국민일보, 2023.09.20> |
| | 사례 | |
| 3 | 표현 | 사람이 아니라 장애와 보장구에 초점을 둔 보도 · 이렇게 수치가 줄어들어 몇 년 뒤 20~30%가 되면 김범진은 휠체어에 의존해야 한다 <32년 구조현장 출동 파킨슨병이 화염처럼 났었다, 한겨레, 2023.09.18> …… 목발에 기대 온몸으로 공을 차고 완벽하게 착지하는 장면은 보는 사람을 숙연케 했다 <[김아진 기자의 밀당] 국민 울린 외다리 떡장수 “삶은 누구에게나 소용돌이 다리 없다고 절망할 일인가요”, 조선일보, 2023.10.14> |
| | 사례 | |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할 때 단어와 표현 모두 중요하다. 어느 하나 잘못 사용해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보도다. <인권보도 준칙>에서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혐오표현이 언론에서 지속되자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0개의 단체에서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며 말과 글뿐만 아니라 몸짓, 행위, 기호, 그림 등도 포함된다.(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문, 한국기자협회, 2020년) 장애인과 관련된 혐오표현도 당연히 포함된다. 하지만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中
- 한국기자협회 외 9개 기관, 2020년 -

1. 우리는 평소 혐오표현의 개념과 맥락, 해악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현상과 발언 등에 혐오표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달하겠습니다.

3. 우리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편견을 확산시키거나, 이들이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공포를 부추겨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 우리는 경제적 불황, 범죄, 재난, 전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혐오표현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권의 측면에서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전하겠습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

세부적인 내용은 3장 1의 다에서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와 마의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가 이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선정적인 기사는 자제해야하고 장애를 무시하는 기사도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와 관련된 기사에서 장애를 부각시키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확산시킨다. 이런 표현은 스포츠나 인터뷰에서 장애인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된다. 굳이 자세하게 보도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과 함께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게 한다. 장애인을 감동의 원천으로 보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언론에서 간혹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승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장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보이게 한다.

이 외에도 장애를 무기력하거나 슬픔 등 부정적인 정조로 표현하는 보도가 있다. ‘장애가 있어 힘들다’, ‘장애 탓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더 나아가 차별과 혐오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장애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의 경우 사회에 강력한 인식을 주게 된다. 이런 표현은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을 보도할 때 자주 사용된다. 특히 정신장애인이 사건/사고와 연관되었을 때 이런 경향이 드러난다. ‘대부분 조현병 환자의 소행’과 같은 표현은 사회로 하여금 정신장애인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계기가 된다.

| | | <2021~2023년 언론(신문)에서 보도된 장애 인권을 무시하는 보도> | |
|---|----|--|--|
| | 표현 | 장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표현 | |
| 1 | 사례 | · “7년간 한 푼 못 받고 노동”... 경찰 ‘제2염전노예’ 수사 <“7년간 한 푼 못 받고 노동”... 경찰 ‘제2염전노예’ 수사, 문화일보, 2021.10.28> · 중증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은 말을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불가능에 가깝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전쟁같은 하루하루’, 세계일보, 2022.06.12.> · 그런데 발표의 계기가 된 올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차량 및 흉기 난동을 포함해 상당수의 흉기난동은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소행이었다. <조현병 환자 대책, 국가가 할 일은 장갑차 배치 아닌 치료·관리, 동아일보, 2023.10.13> | |
| 2 | 사례 | · ‘인간승리’ 막 내린 열흘간의 도전 <‘인간승리’ 막 내린 열흘간의 도전, 국민일보, 2022.03.14>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항저우 아시아 페러게임에서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안기고 있다. <교사 스프린터. 54세 탁구 현역... ‘불굴의 도전’은 계속된다, 국민일보, 2023.10.26> | |
| 3 | 사례 | · 철회는 심한 지적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다. <일상생활 가능하게만> 매일 눈물의 기도, 국민일보, 2022-03-25> · ‘의수’ 낀 채 50년 더 살아야 한다니...가족의 삶이 무너졌다 <‘의수’ 낀 채 50년 더 살아야 한다니...가족의 삶이 무너졌다, 한겨레, 2022.07.13> · 아내 역시 장애 탓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녀 6명 중 3명이 지적 장애... 두 아이는 발달 지연 증상, 국민일보, 2023.04.03> | |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언론보도 준칙>을 통해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10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을 통해 선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 기사는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보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 자체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과 법적인 효력을 가진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뿐만 아니라 언론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정기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과 지적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와 표현에 대해 인지하고 차별, 혐오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언론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연 1회 받는 걸치레식 교육이 아닌 정말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표현에 대해 지적했을 때 이를 수용하는 자세도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관련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을 요청했지만 언론에서는 대부분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 왔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 및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식개선을 통해 언론이 자체적으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기준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보도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또는 법에 준하는 기준이 생긴다면 언론에서 이를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고 기준에 따라 보도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및 혐오표현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하, 차별, 혐오가 사라진다면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예산 분석

고영란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예산 5조 원대 진입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예산 2,744억 원, 53.2% 증가

2023년 3월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단체, 학계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자복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 ▲(사회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글로벌스탠다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하는 정책 방향으로 총 9개 정책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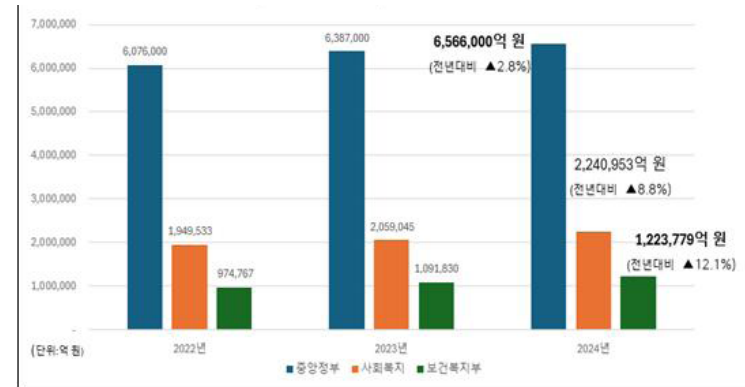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24년 중앙정부 예산 속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 중점과제의 예산 반영을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개요와 예산각목명세서에서 발췌 키워드를 통해 장애인예산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 |
|--------------------------|---------------------------------------|
| 분야 | 중점과제 |
| 1. 복지·서비스 |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및 주거 자기 결정권 강화 (4과제) |
| 2. 건강 | 지역사회 기반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3과제) |
| 3. 보육·교육 |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3과제) |
| 4. 경제활동 |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3과제) |
| 5. 체육·관광 | 체육·관광 등 장애인 일상 속 여가 확대 (2과제) |
| 6.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 정보접근 보장 (4과제) |
| 7. 이동·편의·안전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시설 확대, 재난 안전 강화 (3과제) |
| 8. 권익증진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정신·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4과제) |
| 9. 거버넌스 강화 | 거버넌스 강화, 전달체계 개편 등 정책기반 강화 |

1. 2024년 중앙정부 예산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총 656조 6천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7조 9천억 원(2.8%) 증액되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2023년 대비 18조 1천억 원(8.8%) 증액된 224조 원이다. 중앙정부 총지출의 34.1%를 차지한다. 2024년 중앙정부 예산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이다. 2023년 109.2조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액되었다. 2024년 중앙정부 총지출의 18.6%이다.

(2022년~2024년) 중앙정부 예산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예산을 발표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에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고 한다. 또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8%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고 한다.

2024년 중앙정부 예산

(단위: 억 원, %)

| 예산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총예산 대비비율) | 전년 대비 | | 2022년 대비 | |
|-------|-----------|-----------|-------------------|---------|-------|----------|-------|
| | | | | 증감액 | 증감률 | 증감액 | 증감률 |
| 중앙정부 | 6,076,000 | 6,387,000 | 6,566,000 (34.1%) | 179,000 | 2.8% | 490,000 | 8.1% |
| 사회복지 | 1,949,533 | 2,059,045 | 2,240,953 (34.1%) | 181,908 | 8.8% | 291,420 | 14.9% |
| 보건복지부 | 974,767 | 1,091,830 | 1,223,779 (18.6%) | 131,949 | 12.1% | 249,012 | 25.5% |

II.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122조 3,779억 원이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는 '23년 대비 12조 6,934억 원(13.8%) 증가한 104조 9,119억 원이다. 본 센터에서 발체한 보건복지부 예산 속 장애인 관련 예산은 '23년 4조 8,700억 원에서 5,843억 원(12.0%) 증가한 5조 4,543억 원이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2.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3. 취약계층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를 중점투자 방향으로 선정하였다. 그 속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5조 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 예산 속 사회복지 관련 예산 비중은 85.7%인데 반해,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년과 같은 4.5%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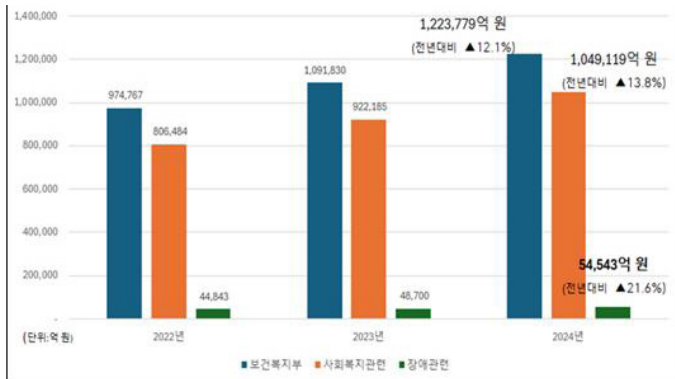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단위: 억 원, %)

| 예산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총예산 대비비용) | 전년 대비 | | 2022년 대비 | |
|-------|---------|-----------|----------------------|---------|-------|----------|-------|
| | | | | 증감액 | 증감률 | 증감액 | 증감률 |
| 보건복지부 | 974,767 | 1,091,830 | 1,223,779 | 131,949 | 12.1% | 249,012 | 25.5% |
| 사회복지 | 806,484 | 922,185 | 1,049,119 (85.7%) | 126,934 | 13.8% | 242,635 | 30.1% |
| 장애인 | 44,843 | 48,700 | 54,543 (4.5%) | 5,843 | 12.0% | 9,700 | 21.6% |

(출처: 열린재정 재정정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인 예산발체)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2024년 복지부 장애인 정책 주요 추진과제는 1.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 2.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3.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4.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5.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접근권 제고, 6. 장애 3법 제·개정 및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 강화이다. 이를 통해 아래 표는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예산 중 주요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액과 증감률을 보여준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주요예산

(단위: 억 원, %)

| NO | 사업명 | 예산액 | 증감액 | 증감률 |
|----|---------------------------------------|--------|-------|--------|
| 1 | 장애인활동지원 | 22,846 | 2,927 | 14.7% |
| 2 | 장애인연금 | 8,932 | 145 | 1.7% |
| 3 |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 6,695 | 348 | 5.5% |
| 4 | 발달장애인 지원 | 3,577 | 1,008 | 39.2% |
| 5 | 장애인일자리지원 | 2,227 | 154 | 7.4% |
| 6 | 장애아동가족지원 | 1,940 | 183 | 10.4% |
| 7 | 장애수당(기초) | 1,506 | 77 | 5.4% |
| 8 |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인건,관리비) | 1,056 | 59 | 5.9% |
| 9 | 영유아보육료 지원(장애아보육료) | 711 | 47 | 7.1% |
| 10 | 장애수당(차상위 등) | 685 | ▽ 36 | ▽ 5.0% |
| 11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장애아전문) | 523 | ▽ 5 | ▽ 0.9% |
| 12 |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 438 | 11 | 2.6% |
| 13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293 | 8 | 2.8% |
| 14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287 | 23 | 8.7% |
| 15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 200 | 59 | 41.8% |
| 16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 127 | 45 | 54.9% |
| 17 |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R&D) | 111 | 12 | 12.1% |
| 18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 100 | - | 0.0% |
| 19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 94 | 21 | 28.8% |
| 20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60 | 12 | 25.0% |
| 21 |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개발(R&D) | 38 | - | 0.0% |
| 22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10 | 4 | 66.7% |
| 23 | 어린이집 확충(장애아전문 신축) | 9 | 9 | 신규 |
| 24 |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율, 제주, 세종) (장애아시설 환경개선) | 4 | 3 | 300.0% |

(출처: 보건복지부 예산개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인 예산발체)

먼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3년 대비 2,927억 원 증액된 2조 2,846억 원으로 14.7% 증가하였다. 복지부 내 장애인 관련 예산 중 43.5%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은 연평균 8.7천 명 증가하여 123.7천 명이다. 지원시간은 월평균 131시간으로 4시간 증가하였다. 서비스 단가는 15,570원에서 580원(3.7%) 증가하여 16,150원이다. 최종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를 위해 1만 명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지원시간은 43.5시간 증가한 월평균 195시간이다. 반면,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23년 608명에서 '24년에 108명 감소해서 500명이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원시간은 월평균 '23년과 같은 154시간이다.

장애인연금은 '23년 8,783억 원에서 143억 원 증액되어 8,926억 원으로 1.6% 증가하였다. 장애인 관련 예산 중 17.0%로 장애인활동지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3,659명 축소되어 361,484명이다. 기초급여는 323,180원에서 334,810원으로 증액되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기초급여액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6% 인상, 부가급여 1만 원 인상이 반영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금은 6,6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8억 원(5.5%) 증액되었다. 장애인 관련 예산에서 12.8% 비중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23년 524개소에서 2개소 증가한 526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IoT, AI 활용 돌봄사업에 4.4억 원 85개소에 지원한다. 학대 피해 장애인쉼터 운영비 17억 원(1억 원 증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비 11억 원(전년 동일), 학대 피해 장애아동쉼터 운영비 12억 원(3억 원 증가)이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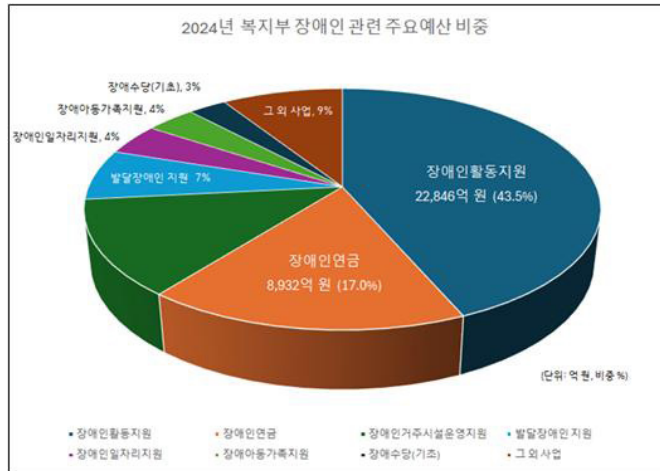
개인일자리지원은 장애인 관련 예산 중 4.2% 비중으로 2,227억 원이다. '23년 대비 154억 원(7.4%) 증가하였다. '24년 지원 대상자는 31,546명으로, '23년 대비 2,000명 증가하였다. 월 552,160원 지원되는 복지 일자리에 1,500명이 증가하여, 총 지원 대상자 중 3/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및 일반형(시간제) 일자리는 각 50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및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는 각 200명 대상자 증가에 그쳤다.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일자리지원의 아쉬운 부분이다.

장애아동가족지원금은 1,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의 지원시간은 '23년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연 1,080시간이다. 지원대상은 전년과 같은 8,005명이며, 시간당 지원 단가는 290원 늘어난 12,140원이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7천 명 늘어나, 113억 증액되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287억 원으로 23억 원(8.7%) 증액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축소되었고, 신규 편성된 예산은 대구 인제요양원 신축 18억 원, 대구 인제재활병원 증·개축 4억 원,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18억 원이다. 기능보강은 축소되고, 요양원, 재활병원, 거주시설 등 신축에 증액되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관련 총예산은 100억 원으로 '23년과 같지만, 장애 친화 건강검진 지원(2억 원),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1억 원), 장애인건강관리(2억 원) 감액되었다.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과 장애 친화 보건의료 기술지원은 일부 증액되었다.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에는 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원(41.8%) 증액되었으며, 정신질환자 정신의료·돌봄 통합관리시스템 등 운영 11억 원(+8억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3억 원(+6억 원) 편성함으로 일부 증액되었고, 특히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1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23년 6억 원에서 4억 원 증액되어 10억 원이 편성되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년 대비 66.7% 증액되었다. 복지부 정책과제 중 하나로서 시군구 지자체 선정 및 참여자 모집,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 등 개인예산제 1차연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3년 4개의 대상 시군구를 '24년에는 8개 시군구로 확대하였고, 대상자는 210명이다.



III.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예산 2,744억 원, 53.2% 증가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2024년 현재 15개 광역시·도 본청과 36개 지자체에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전국 51개 지역에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 제정률을 보인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9개 정책 분야 중 발달장애인 관련 내용은 1. 복지·서비스 분야, 1-2.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중점과제를 통해 볼 수 있다. 세부추진과제는 ▲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낮 활동서비스 고도화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지원 확대이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 |
|---|--|
|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 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예산 5조 4,543억 중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3,577억 원으로 '23년 2,569억 원에서 1,008억 원 증액되어 39.2% 증가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중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6%이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최종중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돌봄, 24시간 돌봄 지원 강화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중점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체계적·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예산은 953억 원 증가한 2,7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2% 증액되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에서는 5.0% 비중이다.

2024년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 예산 구분 | 2023년 | 2024년 | 전년 대비 | | 비중 |
|-----------------|--------|--------|-------|--------|-------------------|
| | | | 증감액 | 증감률 | |
| 장애인 관련 | 48,700 | 54,543 | 5,843 | 12.00% | 4.5% (복지부예산 대비) |
| 발달장애인 관련 | 2,569 | 3,579 | 1,010 | 39.3% | 6.6% (장애인관련예산 대비) |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 1,791 | 2,744 | 953 | 53.2% | 5.0% (발달장애인예산 대비) |

(출처 : 보건복지부 예산 개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인 예산발체)

2024년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예산

(단위: 억 원, %)

| 중점과제 | 2023년 | 2024년 | 증감액 | 증감률 |
|------------------------|-------|-------|-----|---------|
|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 15 | 723 | 708 | 4720.0% |
| 발달장애인 낮 활동서비스 고도화 | 1,735 | 1,980 | 245 | 14.1% |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지원 확대 | 41 | 41 | - | 0.0% |
| 합계 | 1,791 | 2,744 | 953 | 53.2% |

(출처 : 보건복지부 예산 개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인 예산발체)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관련 예산은 '23년 15억 원에서 708억 원 증액되어 723억 원이다. 우선, 최종중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예산에 161억 원이 증액되어 176억 원이고, 전국 34개소, 최종중 발달장애인 340명을 지원한다. 최종중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142억 원)과 최종중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405억 원)은 2024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어 주목된다. 125개소에서 최종중 발달장애인 500명에게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1,500명에게 그룹형 1:1 맞춤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낮 활동서비스 고도화 예산은 1,9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5억 원(14.1%) 증액되었다. 지원단가가 15,570원에서 16,150원으로 580원 상승하였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지원 단가도 580원 상승하여 16,150원으로 총 20억 원 증액되어 557억 원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 사업은 72억 원으로 34개소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지원 관련 예산은 전년대와 같은 41억 원이다.

2024년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예산

(단위:억 원, %)

| NO | 사업명 | 예산액 | 증감액 | 증감률 | 비고 |
|----|--------------------------|-------|-----|---------|--|
| 1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 1,980 | 245 | 14.1% | 단 가 (H) : 15,570 -> 16,150원 (+580원) |
| 2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지원 | 557 | 20 | 3.7% | |
| 3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 405 | 405 | 신규 | 최중증 1,500명 |
| 4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 176 | 161 | 1073.3% | 34개소, 최중증 340명 |
| 5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 142 | 142 | 신규 | 125개소, 최중증 500명 |
| 6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 89 | 13 | 17.1% | |
| 7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72 | 17 | 30.9% | 34개소 지원 |
| 8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 58 | 14 | 31.8% | |
| 9 | 부모.가족 지원 | 41 | - | 0.0% | |
| 10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 35 | - | 0.0% | |
| 11 | 익산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 9 | - | 0.0% | |
| 12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5 | - | 0.0% | |
| 13 | 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 | - | 0.0% | |

(출처 : 보건복지부 예산개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인 예산발체)

2024년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 관련 예산은 5조 원대 진입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인 12% 증액되었다. 하지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6% 인상분과 복지부 예산 내 장애인예산 비중이 4.5% 동일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 예산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예산의 증액과 주간돌봄 개별/그룹형 1:1 지원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권익 옹호와 치료비 지원 예산을 증액한 데 반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가 추진과제이지만 장애인건강보건 관련 장애 친화 건강검진 지원, 산부인과 지원, 장애인건강관리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슈포착

- 발달장애인 학대 실태 분석 - MZ시대에 라떼를 외쳐라
고재원 | 제주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팀장
- 장애인 부모가 느끼는 발달장애인 돌봄 및 의료체계의 고충
전경화 | 전국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인 학대 실태 분석 - MZ시대에 라떼를 외쳐라

고재원 | 제주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팀장

자라는 새싹은, 손안의 작은 세상에서, 봄철 신학기의 풋풋함을 꿈꾸지만, 겨울철 눈보라의 혹독함에 절망했다. 그러나 어제 쌓인 눈은, 라떼로 녹아내리고, 따뜻한 햇살에 새싹들이 움트는 오늘을, 그리고, 다시 봄이다.

우리 사회는 MZ세대에 의한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다. MZ세대¹⁾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출생한 사람(현재의 10대~30대에 해당)으로 정의되는데, 이들은 직설적인 표현이나 자유분방한 행동 등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모가 두드러지고, 관심사나 자기만족 여하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즐기기도 하며, 모바일을 활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통하는 세대 등으로 지칭된다.

MZ세대는 기존의 권위에 대한 도전자이다. ‘라떼(=나 때는 말이야~)’를 찾는 기성세대와의 ‘꼰대(=근대, 어찌라고?)’ 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현시대는 분명 이들이 주도하는 MZ시대이고, 이러한 변화는 제4의 물결²⁾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따르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대의 변화는 결코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현시대의 20대~30대 장애인들도 MZ세대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손안의 작은 세상으로 본인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속 세상에서 말이다.

이들도 여타의 MZ세대와 마찬가지로 SNS에 본인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관심사에 따라 낯선 도전에 나서기도 한다. 향후 이들의 이러한 도전 정신이, 우리 사회의 불합리에 대한 직설적 도전으로 치환되고 장애와 관련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로 귀결된다면, MZ시대는 분명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선택되고 결정된 것들은, 대개 장애에 관한 사고 없었었고, 그로 인해 사고 많음이었다는 사실을, 모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던가? 정말 안타깝게도 MZ시대에도 장애인들에게 사고 많음은 현재진행형이다.

1) 위키백과 참고.

2)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제4의 물결’은 ‘4차 산업혁명’을 의미,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며, 앨빈 토플러의 저서에서 ‘3차 산업혁명’을 ‘제3의 물결’로 언급한 것에서 기인한 표현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학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간하는 연도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서 쉽게 확인된다. 2022년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접수된 전체 신고는 4,958건이고, 이 중 학대 의심 사례 신고는 2,641건에 해당하여 전년 대비 7.3%가 증가하였다. 또한, 2,641건의 학대 의심 사례 신고 중, 1,186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으며, 그중 74.4%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에 해당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연도별로 발달장애인의 학대 피해는 2020년도 884건, 2021년도 1,037건, 2022년도 1,16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위의 보고서 내용들에서, 먼저 주목할 내용은 20대~30대 발달장애인의 성적 학대 피해 현황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적 학대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20년 101건(9.7%), 2021년 90건(10.2%), 2022년 166건(14.3%)으로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2022년 보고서만 하더라도, 20대의 피해가 71건(42.8%)으로 가장 많으며, 30대의 피해가 41건(24.7%)으로 다음으로 많은 점이 확인된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학대 행위자의 관계를 연도별로 살펴봐도,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적 학대의 피해가 2020년 15건(16.7%), 2021년 12건(16.7%), 2022년 35건(21.1%)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내용은 20대~30대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착취 피해 현황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2020년 225건(25.5%), 2021년 265건(25.6%), 2022년 217건(18.7%)으로 학대 유형별 비중은 감소한 듯 보이나,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착취를 연도별·연령별로 비교해보면, 20대~30대의 피해가 2020년 130건(57.7%), 2021년 146건(55.1%), 2022년 108건(49.8%)에 해당하여, 매년 약 50% 이상의 경제적 착취 피해가 이들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위의 학대 현황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 연령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그마한 우려 때문이다. 「2023년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은 시점에서 선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으나, 2023년의 개인적 경험에 따른 사고로 감히 직언한다면, 2023년도는 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나 경제적 착취가 이전보다도 심화하였을 것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최근 접하였던 학대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역시나 20~30대 발달장애인의 성적 학대나 경제적 착취에 관한 피해 내용이 많았다. 한 발달장애인은 소개팅(즉석 만남) 앱으로 알게 된 사람과 즐거운 데이트를 희망하였지만, 데이트를 빙자하여 상대방은 금전 사용이나 물품 구매 등을 혹독하게 요구해왔고, 결국 경제적 착취라는 절망에 허덕이고 있었다. 어느 발달장애인은 SNS로 알게 된 사람과의 영원한 사랑을 희망하였지만, 사랑을 빙자하여 상대는 신체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의 전송, 원치 않는 성관계 등을 혹독하게 요구해왔고, 결국에는 성적 학대라는 절망에 웅크리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이미 혹독한 만남으로 인해 절망과 마주하고 있었다. 한 발달장애인이거나 어느 발달장애인은 그저 MZ시대에 MZ세대의 MZ다움을 추구하였을 뿐이다. SNS 등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낯선 사람과 새롭게 소통하며, 연애라는 자기만족을 좇아 적극적으로 만남에 도전한, 이들은 MZ장애인이었다. 그러나 결국 학대라는 겨울철 눈보라의 시름을 경험해야 했고, 혹독한 만남의 절망에 허덕이고 웅크려 있어야 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처지에 놓여야 하는 것인가? 한참의 사고 끝에 찾은 답은 MZ다움이었다. 이들은 진정한 MZ다움을 누리지 못했다.

MZ다움은 스마트폰을 벗 삼아 제4의 물결이라는 흐름 속을 노니는 유연한 자신감에서 비롯한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고, 필요한 상황에 다채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MZ다움을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MZ다움의 핵심은 정보의 활용 능력이다. MZ세대들의 성향도, 표현이나 행동도, 자기만족을 위한 도전적 태도도, 모두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본인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20대~30대 발달장애인에게도 이처럼 유연한 자신감이 있는가? 없다. 아니, 정확히 표현한다면 부족하다. 현재의 이들은, 누군가가 정해진 답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경직된 사고에서 비롯한 자신감만 있을 뿐이다. 결국 유연함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상대적인 취약함이 표적이 되어 이들은 학대의 절망으로 내몰렸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경직됨이 아닌 유연함을 알려주었는가? 어느 누구도 그러지 못하였다. 물론, 어떤 누군가는 아직 늦지 않았으며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든가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이다. 이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며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등 유연한 사고를 갖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는 신문을 보며 ‘라떼’를 외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며 모바일 속 세상에서 MZ장애인에게 탁월 위험을 예견했어야 했다. 지금까지의 역사와 같이, 사고할 기회를 놓쳤기에 사고는 일어났다. 한 발달장애인이거나 어느 발달장애인들은 점점 더 늘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들이 할 일은 정해져 있지 않은가?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한 ‘나 때’의 절망을 다시 외치며, 다음 세대를 절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뜰채가, 다음 세대가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한 거름망이, 다음 세대가 성장통을 견뎌내기 위한 시간벌기가 필요한 오늘을, 그리고, 다시 봄이다.

장애인 부모가 느끼는 발달장애인 돌봄 및 의료체계의 고충

전경화 | 전국장애인부모회

저는 18세 남자 지적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는 25주 만에 715g 초미숙아로 태어나서 생후 92일 동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해야 했습니다. 6개월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 물리와 작업, 감각통합, 언어 등등 병원비와 치료비는 온전히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3세 때 뇌병변 장애판정을 받은 후 5번의 장애재판정을 거쳐 지적장애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청소년이 되어있습니다.

생후 6개월 이후 종합병원에서 주 3회 물리와 작업치료를 했었는데 오랜 기간동안 다니고 있는 재활 환자임에도 매번 치료 처방을 받으러 외래 진료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가와 mri같은 검사도 때때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하라는 모든 평가와 검사를 다했지만 5세가 되던 해에 신규 환자가 많이 밀렸다는 이유로 치료 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1. 발달장애인 우선 진료권

어린 나이일수록 기다림은 더 힘이 듭니다. 피할 수 없는 병원 진료 발달장애인 우선 진료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엄마들은 압니다. 장애가 나아지지 않는다는걸.. 어린 나이에는 영구장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장애인은 크면서 장애가 나아질 수도 있다는 이유라서 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재판정을 받을 때마다 고가의 재판정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도 최종중 발달장애인 경우 아이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 엄마가 의사의 물음에 대답을 하는 평가인데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단말입니다. 비합리적인 장애진단비 현실적으로 줄여주십시오.

2. 장애평가지 문항

5번의 장애재평가를 받는 동안 매번 같은 질문과 아이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황당한 질문들에 평가지 한 장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나요?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치발이 심해 보행이 불안하고 눈을 자주 감아서 항상 옆에서 손을 잡고 눈을 떠야되 까치발 들면 안되 계단 잘봐. 하며 걸어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거, 위험한거, 가시, 밥 한숟가락의 적정양을 알지 못합니다. 뜨거워 호호부는 모델링을 해주어야 하고, 가시와 뼈를 발라줘야하고, 밥한공기를 수저로 뜨면 다시 떠보자하고 돌려줘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과는 맞지 않는 장애평가지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평가지들 만들어 주십시오.

3. 특수재활치료

언어, 음악, 미술, 특수체육, 심리운동과 같은 특수재활치료는 비용이 높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작업, 물리치료와는 다르게 사설치료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수가 심한 장애인보다 많고 경계선장애인, 비장애인과 함께 많은 수의 사람이 특수재활치료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재활의 목적으로 특수재활치료를 할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필요합니다.

4. 의료 환경

지난 코로나 사태때 장애인아이들이 많이 퇴화했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치료실 또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특정 감각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하므로 각종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 도구와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주사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초등 4학년때 독감주사기를 빼는 순간 약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온 후로 병원 근처에는 가려고 하지를 않아서 독감은 물론이고 이후 필수 예방접종도 접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주사기에 대한 공포감이나 거부감이 심합니다. 붙이는 독감약이나 먹는 독감약 같은 여러 종류의 독감백신 종류를 발달장애인을 위해 확보해 주십시오.

5. 치과 진료환경

치과는 특히나 발달장애인들에게 너무나 높고 큰 벽입니다. 크기계 소리등에 민감한 경우 반복적으로 여러번 노출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권 특수학교(성남혜은학교, 성은학교)의 경우 학교내에 구강 관리실이 있어서 학교내에서 치과진료를 선행학습으로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강보건실이 많아져 치과진료의 사회적응 훈련 경험이 쌓인다면 학령기를 지나 사회로 나왔을 때 치과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덜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발달장애인 특화 의료진

전신 마취를 위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찾아 원정 진료를 가야 하고 높은 치료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기간을 위해서, 비단 치과뿐만 아닌 모든 병원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내가 내아이의 다름을 느끼고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생각될 때 마음놓고 이렇다 저렇다 히스토리를 울며 늘어 놓지 않아도 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전문 병원, 의료진과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후천적 신체장애인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만큼 태어났을 때 부터 키우는 내내 의료기관과는 뿔뿔이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병에 있어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듯 장애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장애를 빨리 발견하고 조기 치료 받기 시작한다면 예후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보다는 희망적일 것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도 건강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들과 틀림이 아니라 다름임을 알아주기를 기원하며 발달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바랍니다.

영화평

· 멈출수 없는 행진 -류철 감독의<비극을 찾아서>
류미래 | 푸른영상 감독

멈출수 없는 행진 -류철 감독의 <비극을 찾아서>

류미레 | 푸른영상 감독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많습니니다. 편견은 무의미하다고”

장애인 미술공모전을 알리는 기사 제목입니다. 2005년부터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오면서 늘 고민해왔던 ‘완성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신문 기사를 통해 만나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번 호에 준비한 영화는 2회 반짝다큐페스티벌 상영작 <비극을 찾아서>입니다.

28분이라는 짧은 영화인데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년간 진행하다 중단한 어떤 교육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늘 시대의 최전선에 서있다고 생각되는 다큐멘터리,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비극을 찾아서>는 관객이 비극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고양시키게 된다는 니체의 비극론과 맞닿아있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장애인 성재는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햇빛촌’의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촌이 복지관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지며 단원들과 다투지만 결국 긍정의 마음으로 단원들과 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비극을 찾아서>는 영화 속 장면과 영화 밖 장면들이 교차되는데 영화가 전개될수록 어떤 부분이 연기이고 어떤 부분이 실재인지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아니 구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장애인 예술의 완성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5년간 진행해왔던 교육을 접게된 이유가 바로 완성도에 대한 시선 차이 때문이어서요. 극영화든 다큐멘터리 영화든 편집 단계를 꼭 거칩니다. 편집은 촬영된 여러 컷들 중에서 적당한 컷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촬영본 중에서 적당하지 않은 컷들은 버립니다. 선택된 컷도 다 쓰는 경우는 없고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극영화라면 촬영본의 앞뒤에 위치한 감독의 콜사인을 잘라내고 다큐멘터리도 앞뒤 컷과의 연결을 생각해서 컷의 길이와 내용을 다듬습니다. 그렇게 감독의 의도에 맞는 순간들만 이어붙이고 나면 매끈한 한 편의 영화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연극은 다릅니다. 한순간에 공연하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적인 작업인 연극은 관객과 직접 대면하여 연기를 하는데 같은 자리에서 배우는 생산을 관객은 수용을 한 번에 하는 ‘동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공연의 그 순간까지 무수히 많은 연습을 합니다.



5년 동안 진행했던 교육을 그만둔 이유는 영화에서 연극으로 그 장르를 바꾸면서 단체 운영진과의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완성도에 대한 입장 차이였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되기까지 수없이 같은 연기를 반복하고 그렇게 골라진 화면만으로 만들어왔던 영화. 과정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는 기성의 영화들과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대본에서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특별했습니다.

다만 그 특별함은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었고 1년 내내 땀흘려 만들었어도 그 길이는 1시간을 넘지 못하기에 매번 그 진행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서 메이킹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1시간이 안되는 짧은 영화, 그리고 어떨 때면 본편보다 더 긴 메이킹 필름. 2005년에 발달장애인 미디어교육을 시작해온 이래 상영회 영상은 꼭 그렇게 구성해왔습니다. ‘완성도’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이가 있었음에도 4년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협업했던 장르가 영화였고 완성영상이 본편과 메이킹이 결합된 형태라서 저희들과 단체의 운영진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절충하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극으로 장르가 옮겨지자 입장은 확연히 같았습니다. 가끔 연습장면을 지켜본 운영진들은 이대로 무대에 올려도 되는지 걱정했습니다. 영상이 결합된 뮤지컬, 그것이 그 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뮤지컬 교육을 진행하고 무대를 총괄하는 연출자 선생님은 그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예술과 무대예술의 결합은 저희로서는 처음 해보는 시도라서 널리 알리고 싶었지만 운영진은 특별한 홍보 없이 지인들만 초대하는 조촐한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무대는 새로웠고 그리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과 그 성과를 나누고 싶어서 올해에는 탈시설 운동의 중심 프리휠재단의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거주인들과 함께 새로운 무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방법론을 소개드립니다. 2004년 <아무도 모른다>가 개봉했을 때 한국을 방문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영화가 ‘재현 드라마’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실제 사건을 모태로 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은 1년간 배우인 아이들과 함께 발견하고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사도 주지 않은 채 편하게 놀라는 부탁만 하고 그 장면을 찍는 식이었습니다. 저희 연출 선생님도 비슷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수업의 시작은 참여자들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대본을 짜고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본이 먼저 있고 그것을 연습해서 익히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먼저 있고 그 분들과 함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와 표현하고자 하는 동작을 만든 것입니다. 쉽지 않았지만 장애인 예술의 완성도 달리 표현하자면 장애인 예술의 미학적 성취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짝다큐페스티벌에서 <비극을 찾아서>를 보면서 동지에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영화는 장애인이 마주하는 일상의 문턱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술하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지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주인공격인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햇빛촌’은 2010년 진해장애인복지관의 재활프로그램으로 시작해 10여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극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지관은 ‘햇빛촌’ 보고 독립하라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관록있는 극단이라 하더라도 예술인들 생계는 뻔하잖아요. 독립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탄 성재와 높게 솟은 건물이 함께 잡힌 화면은 요새처럼 견고한 현실과 답답하고 무력한 장애인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실은 비극적이고 ‘햇빛촌’ 단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연도 ‘비극’입니다. 컴퓨터에서는 니체의 ‘비극의 탄생’ 해설이 흘러나옵니다. 답답한 대표가 단원들에게 대책을 물어도 답은 나오지 않고 영화는 진척이 없으니 대표는 자꾸 화를 냅니다. 제가 앞에서 어느 부분이 연기화면이고 어느 부분이 다큐화면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긴 했지만 후반부로 가면서부터 마음이 묻어나는 화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단원들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만 쓸 수 있는 단어(영화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를 주고 받으며 크게 충돌하고 화가 난 단원들 중 일부는 안나와버립니다. 너무 그러지 말라는 다른 단원의 부드러운 항변, 화가 난 단원을 달래기 위해 집을 찾는 화해장면을 거치고 나면 대사의 톤이 달라져 있습니다.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를 읊조리던 단원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노여워합니다. “살까 죽을까 어느 것이 더 인간다운가?”. “살까 죽을까 어느 것이 더 비극적일까” 반복되는 대사는 영화가 진행될수록 극적으로 변해갑니다. 여기에 중간중간 브릿지처럼 들어가는 단원들의 ‘행진’, 그리고 직접 연주하는 첼로 연주곡, 또 직접 부르는 ‘You Raise Me Up’. 우리 몸 안에 영화를 감상하는 근육이 있다고 상상해보면 이 영화는 그동안 우리가 잘 안 써왔던 근육을 쓰게 합니다. 그 낯설을 받아들이고 지그시 응시하다보면 장애인 예술의 정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도는 기성의 것들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주영 활동가가 만든 <외출 혹은 탈출>의 화면에 대해서 역시나 지금은 고인이 된 박종필 감독은 ‘흔들림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주영 감독이 손으로 들 수 없어서 휠체어에 카메라를 묶고 길을 갑니다. 휠체어의 요동이 그대로 반영되면 그 화면. 장애인 예술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로 사회와 소통합니다. 그래서 완성도 또한 기성의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제 마음이 가장 요동쳤던 순간은 영화가 끝난 후 나오는 자막을 읽을 때였습니다. 진행에 ‘어머님들’이라는 항목이 있더군요. 2005년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미디어교육을 했을 때 부모님들은 그 결과물에 뿌듯해하시면서도 그대로 배급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까만 화면에 소리만 내보냈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저희가 중단한 교육의 운영진도 비슷한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성의 결과물에 익숙해서 기성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결과물들을 판단하게 되면 장애인 예술의 가치는 그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비극을 찾아서>의 진행을 맡아 영화촬영을 도왔던 ‘어머님들’은 기성의 영화들과는 사뭇 다른 이 영화의 공개를 흔쾌히 허락하신 겁니다! 물론 모두 성인이니 햇빛촌 당사자들이 판단해서 공개여부는 결정했을 것입니다만 몇 년 전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완성된 영화의 얼굴을 가려야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머님들’이라는 자막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드는 예술작품들 또한 기성의 잣대로 완성도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이 글을 시작하며 인용했던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라는 기사 속 완성도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장애인 예술가들은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에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고 정형화된, 갇힌 예술관과의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행진 장면처럼 장애인 예술의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비극을 찾아서>, 꼭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